

○ 이용상태 : 매수 희망자가 주거용(건물)으로 사용중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매각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적(m ²)	매수희망자주소및성명	비 고
마포동 339-2	대	1.8	마포동 340-3 정태훈외 1인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도화동 마포동민회(노인정)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규정에 의거 매각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

의안 번호	320
----------	-----

제출년월일 : 1994. 7. 18.
제 출 자 : 총무재무위원장

○ 주 문

1.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 하는등 재원 마련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함.

2. 마포구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망원동 수해 피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

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임.

○ 제안이유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임.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 구가 건립추진중에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여 구민의 복지행정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엄숙히 결의하는 바임.

○ 결의안 : 별첨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임.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 구가 건립 추진중에 있는 바, 동사업 추진이후 10년이 된 현시점까지 부지확보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행위는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음.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우리구민의 열망은 고사하고 상암동 난지도에 52만9천여평의 쓰레기 매축장을 건설하여 8.5 t 트럭 약 1천만대분의 각종 폐기물을 쏟아 부은 결과.

침출수 방지등 위생처리 시설미비로 지하수의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인근 지역주민이 호흡기 질환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우리구만이 받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관계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이러한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여 구민의 복지행정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엄숙히 결의하는 바임.

1.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개관하여 사용중임에도 마포구에서는 '93. 6월까지도 동회관 건립 추진반을 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역시 수시로 전보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 하는등 재원 마련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함.

2. 서울특별시에서는 85. 11월부터 구민회관 건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이상 충분한 지원을 해왔음.

마포구에서는 창전동 와우산 부지에 동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의 과다로 자치구 부담의 재원(재정자립도 53%)확보가 곤란하여 향후의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마포구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망원동 수해 피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임.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
심 사 보 고 서

1994. 7. 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 소 : 마포구 창전동 42-7
(시범아파트 1-301)

성 명 : 오 영 순의 23인

나. 소개의원 : 이 종 일 의원

다. 접수일자 : '94. 6. 23.

라. 회부일자 : '94. 6. 23.

마. 상정일자 : 제23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4. 7. 6.)상정, 질의토론, 현장확인 제2차위원회('94. 7. 7.)상정, 채택

2. 청원요지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늘어나는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산책로의 필요성이 절대 요망되는 바,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이종일 의원)

와우산 근린공원에 순환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늘어나는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와우산 근

린공원에 순환산책로의 필요성이 절대 요망되는 바,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진행중인 창전동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벽축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재개발사업 주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순환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청원인과 더불어 의회에 요망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와우산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본 조성계획에 의하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구간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산책로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보행 산책로만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1,089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앞으로 늘어나게될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유사시 차량진입도 가능한 도로의 개설은 지형적으로나 공원 이용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필수적 공원시설인 도로의 개설은 공원의 기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 공원조성 목적에도 합당하고 인근 고지대 주민들의 통행에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산책로 구간 주변에 용벽 축조공사가 시행될 예정인바 이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도시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부담 문제도 관계 부서에서는 재개발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